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February,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중국 내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실무 요점

1. 외국 중재 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법적 근거
2.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3. 외국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는 7가지 경우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외화 및 홍콩·마카오·대만 통화의 연체이자 계산기준에 관한 회신》
02. 국무원 반독점 반부정경쟁위원회 《의약품 분야의 반독점 지침》
03.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보험그룹 집중도 리스크 감독지침》 발표에 관한 통지
04.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기관의 노동 대가 미지급 범죄 처벌 및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형적인 사례》의 발표에 관한 통지》

■ 법률 뉴스 ■

중국 내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실무 요점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깊이 통합됨에 따라, 외국 중재 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은 여전히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별 사법 실무의 편차로 인해 외국 중재 판정의 실효적 집행에는 다양한 난관이 존재합니다. 본 문서는 외국 중재 판정이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실무 요점을 간략히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외국 중재 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2024. 1. 1. 시행) 제 304 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법적 효력을 갖는 중재 판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있다. 만약 피집행인이 중화 영토 밖에 거주지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해당 판정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다른 적절한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심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 중재 판정이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건의 관할 법원 및 심리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심리 기준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이하 《뉴욕 협약》)을 외국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의 심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뉴욕 협약》은 1987년 4월 22일 중국에서 발효되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조약으로서, 중국 사법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뉴욕 협약》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계약적

또는 비계약적 당사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뉴욕 협약》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심리 및 처리하게 됩니다.

2.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신청과 집행 신청은 두 가지 독립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중재 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판정이 법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먼저 승인 신청을 한 후에 집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법 실무에서는 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신청과 집행 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한 번의 신청서만 제출하며, 그 신청서에 “승인 및 집행 신청”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관련 사법 해석, 《해외 중재 및 외국 중재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법원 공지》(2008년 개정), 《중재 판정 사법 심사 사건 보고에 관한 규정》(2021년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사법 문서를 근거로, 위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① 중국 내 주체뿐만 아니라 해외 주체도 중국 내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 상설 중재 기관뿐만 아니라 임시 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법적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 또한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은 소송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법률상 시효 중지 및 중단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④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할 때, 중국 법률은 항소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의 재심 기회만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불승인 및 불집행”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결정이 이미 고급인민법원에서 회신을 거쳐 내려진 것이므로 번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외국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는 7가지 경우

《뉴욕 협약》 제 5 조에 따르면, 법원이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5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유효한 중재 계약이 없는 경우: 중재 계약 당사자가 적법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해당 중재 계약이 그 준거법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중재 계약에서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고, 중재 판결 소재지 법률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 ② 중재 절차에서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변론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 ③ 초과 판결을 내린 경우. 단, 중재에 회부된 결정이 중재에 회부되지 않은 사항과 구분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판정 부분은 여전히 승인 및 집행 가능함.
- ④ 중재 절차가 약정된 중재 규칙을 위반하거나 중재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 ⑤ 중재 판정이 최종 판정이 아닌 경우: 중재 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거나, 중재 판정을 내린 국가 또는 해당 판정의 법적 효력을 승인한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위 5 가지 사유는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2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사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국 법률에 따라 해당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②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국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주로 위 7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사실관계나 법적 기준 자체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 0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외화 및 홍콩·마카오·대만 통화의 연체이자 계산기준에 관한 회신》 
- 02. 국무원 반독점 반부정경쟁위원회 《의약품 분야의 반독점 지침》 
- 03.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보험그룹 집중도 리스크 감독지침》 발표에 관한 통지 
- 04.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기관의 노동 대가 미지급 범죄 처벌 및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형적인 사례》의 발표에 관한 통지》 

범무법인[유] 지평